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99 호 2019. 10. 10.(목)

선	기 관 의 장
람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12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13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219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1091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1100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1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 (☎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212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일보(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 87, 중앙빌딩 5층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

4. 점용 지역의 위치, 면적 및 채취량

가. 위치 : 명촌동 794-1번지 일원

나. 면적 : 4,242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2019. 10. 18. ~ 2019. 10. 1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213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매곡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종합건설(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빌 103-301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설치(가설건축물 축조)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북구 신천동 316-5번지

나. 면적 : 18㎡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2019. 10. 1. ~ 2020. 7. 18.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21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당수골30길 5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0.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45-14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30 길 5	2019-10-10	당수나무가있는당수골 명칭사용하여서도로명 을부여함.	2017-05-04
2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75B 2L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10길 5	2019-10-10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3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118-1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888-52	2019-10-10	옛지명이며현재도사용 하는명칭이므로도로명 을부여함.	2009-08-20
4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43B 2L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 로 4	2019-10-10	독립운동가 박상진 명칭 사용	2018-05-10
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23-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 1로 107	2019-10-10	호계·매곡지구명칭사 용을사용하여서도로명 을부여함.	2017-05-04
6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31-1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73	2019-10-10	법정동인구유동에위치 해서도로명을부여함.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127-13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45-1	2019-10-10	법정동인구유동에위치 해서도로명을부여함.	2004-08-09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1091호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 기 간 : 2019. 10. 10. ~ 10. 30.(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19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제공에 따른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을 거주여건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독거노인 등)까지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생활민원'에 대한 정의 수정(안 제2조)
- 재료비 무료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

3.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소통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주소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주민소통실
- 전화번호 : 052)241-7237, 팩스번호 : 052)241-7269

6. 기타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의 사회취약 계층의 생활불편사항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1. ~ 3. (생 략)</p> <p>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u>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불편사항</u></p> <p>5. (생 략)</p>	<p>제2조(정의)</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u>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 의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u></p> <p>5. (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p> <p>① ~ ③ (생 략)</p> <p>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 공에 따른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 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u>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세대의 경우 무료로 한다.</u></p>	<p>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 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u></p>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②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⑩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생활민원담당 운영)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의 경우 무료로 한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성 명(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 - 1100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등)
- 나.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청구 및 이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 제4조의3)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31.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안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안전정보과
- 전화번호 : 052-241-7894, 팩스번호 :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건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지원에”를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지원 대상)”을 “(지원 결정)”으로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지원내용)”을 “(지원 기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하고, “지급받은”을 “그”로 한다.

제7조의 제목“(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를“(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로, 제7조 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같은 항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로 한다.

제9조 본문 및 같은 조 단서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4조에 따라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피해주민-----
-----.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기준
--- 피해상황,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9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7조제6항에

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 원인제공자-----
----- 그 -----
-----.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 피해주민-----.

② ----- 피해주민은 ----- 10일 -----

③ ----- 피해주민이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피해주민이 -----
----- 피해주민-----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방법) -----

